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09호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적은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드론 운용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원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교육을 지원하여 드론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창원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발판을 갖추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호를 삭제함(안 제6조)

다.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라. 창원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3)

마. 조제목을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위탁사무 중 제5조를 삭제함(안 제8조)

바. 예산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사. 실태파악을 실태조사로 변경하고, 실태조사 내용에 자체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7,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cost403@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태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1
----------	-----

발의연월일: 2023. 10. .

발 의 의 원: 손태화 · 강창석 의원(2명)

찬 성 의 원: 구점득 · 김미나 · 김수혜 · 김우진 · 김혜란
남재욱 · 박강우 · 박선애 · 박승엽 · 서영권
성보빈 · 이정희 · 정길상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적은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드론 운용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원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교육을 지원하여 드론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창원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발판을 갖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호를 삭제함(안 제6조)

- 다.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 라. 창원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3)
- 마. 조제목을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위탁사무 중 제5조를 삭제함(안 제8조)
- 바. 예산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 사. 실태파악을 실태조사로 변경하고, 실태조사 내용에 자체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 법령
- 다. 현행 조례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드론산업 육성)”을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성을”을 “육성 및 활성화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9호) 중 “육성”을 “육성 및 활성화”로 한다.

5. 드론 전시회, 드론 촬영대회, 드론 경진대회 등 행사 및 교육 추진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① 시장은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이하 “드론 자격증”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멀티콥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선발 대상자는 지원모집 정원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소득 및 근로활동이 없고 재취업 의사가

있는 취업준비생

2. 창원시에서 소득활동을 시작한지 5년 이하인 사회초년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지원자가 지원한 해당 연도 안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종: 최대 100만원
2. 2종: 최대 80만원
3. 3종: 최대 5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3(드론 체험교육 지원)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창원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최대이륙중량 250그램 이하 무인멀티콥터의 조종 체험교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위·수탁 관리)”를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및 제6조와 제7조”를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으로,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4. 교육의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제9조제1항 중 “제6조 및 제7조”를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드론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실패과약)”을 “(실패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련”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체계획과”로, “실패과약을”을 “실패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패과약”을 “실패조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p><u>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u></p> <p>제6조(<u>드론산업 육성</u>) 시장은 드론 산업의 <u>육성</u>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드론산업 기술·시장 선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추진</u></p> <p>6. <u>드론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u></p> <p>7.·8. (생략)</p> <p>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 <u>육성</u>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u><신설></u></p>	<p><u>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u></p> <p>제6조(<u>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u>) -- ---- <u>육성 및 활성화를</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드론 전시회, 드론 촬영대회, 드론 경진대회 등 행사 및 교육 추진</u></p> <p><u><삭제></u></p> <p>6.·7. (현행 제7호 및 8호와 같음)</p> <p>8. ----- <u>육성 및 활성화</u>-----</p> <p><u>제7조의2(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①</u> <u>시장은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이하 “드론 자격증”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는 같은 법 시행규칙</u></p>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멀티 컴퓨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선발 대상자는 지원모집 정원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소득 및 근로활동이 없고 재취업 의사가 있는 취업준비생
2. 창원시에서 소득활동을 시작한 지 5년 이하인 사회초년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지원자가 지원한 해당 연도 안에 드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

<신 설>

제8조(위·수탁 관리)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와 같다.

1. 1종: 최대 100만원
2. 2종: 최대 80만원
3. 3종: 최대 5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3(드론 체험교육 지원)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창원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최대이륙중량 250그램 이하 무인멀티콥터의 조종 체험교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의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략)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실태과약)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 및 드론운용에 관한 실태과약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과약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의 지원) ① ----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② 시장은 드론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①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체계획 ----- 실
태조사 -----.

② ----- 실태조사-----

-----.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4.~34. 생략)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이하 생략)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1.~4. 생략)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가.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9. 생략)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제2항 이하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2항 이하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

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

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제2항 이하 생략)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2항 이하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11.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제2항 이하 생략)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방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드론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드론산업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드론 운용시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관한 사항
8. 드론의 안전 운용과 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발굴 및 지원
2. 드론 관련 기술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 사업 지원
3. 드론 관련 창업, 경영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5. 드론산업 기술·시장 선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추진
6. 드론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산불감시 및 산림 병해충 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위·수탁 관리)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드론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창원시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창원시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창원시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산업 발굴, 사업기획 협조, 국비확보 협조 등
2. 드론산업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 등
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각종 협력사업 발굴 등

④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실태파악)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 및 드론운용에 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합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